

[정 정 대 비 표]

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펀 드 명	BNK든든한TDF2035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
정 정 서 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 정 사 유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,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반영,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
효 력 발 생 일	2023년 01월 19일

■ 정정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			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12.13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12.13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 <추가>	- 2022.12.13 기준으로 업데이트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반영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다은 운용역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	-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제6영업일(D+5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제9영업일(D+8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제7영업일(D+6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제10영업일(D+9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	-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6영업일(D+5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9영업일(D+8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7영업일(D+6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10영업일(D+9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

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			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12.13

	재무제표 확정		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12.13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 <추가>	- 2022.12.13 기준으로 업데이트 및 부책임용전문인력 반영 부책임용전문인력: 이다은 운용역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	-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제6영업일(D+5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제9영업일(D+8)</u> 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제7영업일(D+6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제10영업일(D+9)</u> 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	-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6영업일(D+5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9영업일(D+8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7영업일(D+6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10영업일(D+9)</u> 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	- 2023.01.19: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, 부책임용전문인력 반영,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- <추가>	- 2022.12.13 기준으로 업데이트 및 부책임용전문인력 반영 부책임용전문인력: 이다은 운용역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가. 투자 대상 (생략) 나. 투자 제한 ① (생략) ② 이 투자신탁 ~ 있습니다. 가. (생략)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--- (생략)---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</u>	가. 투자 대상 (현행과 동일) 나. 투자 제한 ① (현행과 동일) ② 이 투자신탁 ~ 있습니다. 가. (현행과 동일)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--- (생략)---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<u>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</u>

		<p>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---(이하 생략)---</p> <p>다. (생략)</p> <p>③ ~ ⑨ (생략)</p>	<p>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---(이하 현행과 동일)---</p> <p>다.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~ ⑨ (현행과 동일)</p>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<p>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</p> <p>(1) 주요 투자전략</p> <p><u>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- 펀드규모 및 투자비중 업데이트</p> <p><u>투자대상국가의 현황</u></p> <p>- 투자대상국가 업데이트</p>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가. 매입</p> <p>(1) ~ (2) (생략)</p> <p>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</p> <p>⇒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</p> <p>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</p> <p>⇒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4영업일(D+3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</p> <p>(다) (생략)</p> <p>(4) (생략)</p> <p>나. 환매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</p> <p>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6영업일(D+5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9영업일(D+8)</u>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</p> <p>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7영업</u></p>	<p>가. 매입</p> <p>(1) ~ (2) (현행과 동일)</p> <p>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</p> <p>⇒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</p> <p>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</p> <p>⇒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4영업일(D+3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</p> <p>(다) (현행과 동일)</p> <p>(4)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환매</p> <p>(1) (현행과 동일)</p> <p>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</p> <p>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6영업일(D+5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9영업일(D+8)</u>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</p> <p>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7영업일</u></p>

		<p>일(D+6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10영업일(D+9)</u>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(3) ~ (5) (생략)</p> <p>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제7영업일전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<u>제8영업일전일</u>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(이하 생략)</p>	<p>(D+6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10영업일(D+9)</u>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(3) ~ (5) (현행과 동일)</p> <p>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7영업일전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<u>8영업일전일</u>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12.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자산총액)에서 부채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부채총액)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</p>	<p>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자산총액)에서 부채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부채총액)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</p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<p>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p> <p>- 보수 및 수수료 부분 비용 관련 주석 추가</p>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과세 관련 내용 업데이트	<p>가. 이익배분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(이하 생략)</p>	<p>가. 이익배분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
		나. 과세 (생략)	나. 과세 (현행과 동일)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-	최근 결산기 재무 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12.13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-	-	- 2022.12.13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 령 개정사항 반영	- 의무해지 (생략) - 임의해지 ▶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 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 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, 동 규 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 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, 해지 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 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한국예탁 결제원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 지 하여야 합니다.	- 의무해지 (현행과 동일) - 임의해지 ▶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 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 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, 동 규 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 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, 해지 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 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전자등록 기관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.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 령 개정사항 반영	가. 정기보고서 (1) (생략) (2) 자산운용보고서 -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 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 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 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 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 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 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</u> 교부하여야 합니 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 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 제2 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	가. 정기보고서 (1) (현행과 동일) (2) 자산운용보고서 -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 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 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 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 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 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 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</u> <u>교부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수익자가 해 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 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 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

		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 (이하 생략)	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<끝>.